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
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(안)	재무과

(2018. 2. 1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유 준 상]

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-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1월 17일(수)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8년 1월 18일(목)

4. 관계법규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
(도시계획시설의 설치·관리)
-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 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」 제4조(세출)

5. 제안이유

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제4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대상인 『대흥2구역 경관녹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』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6. 사업의 필요성

- 공공기여 예정인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경관녹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가용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해당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및 대흥로 인근지역으로 이화여대 상권 방문차량이 많아 평소에도 주차수요가 매우 큰 지역임으로 대흥로에 접해있는 영리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지정해제 됨에 따라 인근 주택가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- 또한, 공영주차장 건립대상지를 기준으로 반경 300m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83.63%로 마포구 평균 105.88%, 대흥동 평균 105.23% 대비 현저히 낮아 공영주차장 건립이 필요한 지역임.

7. 주요내용

- 건립부지 현황
 -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 예정 토지
 - 건립 대상부지 개요

부지위치	부지면적	부지용도	비 고
마포구 대흥동 73-27 일대	1,102.7㎡	경관녹지	□ 재산가격 : 4,962,150천원 - 산정내역 : 4,500,000원(2017년 공시지가) × 1,102.7㎡(부지면적) = 4,962,150,000원

※2014.3.16. 토지이용계획변경 【경관녹지⇒경관녹지+지하주차장 중복결정】

- 대흥2구역 경관녹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
 - 위 치 : 마포구 대흥동 73-27 일대
 - 대흥2구역주택개발사업구역내 경관녹지 지하
 - 부지면적 : 1,102.7㎡
 - 주차장 면적 : 619.14㎡ (187.3평)
 - 조성규모 : 지하1층/주차면수 20면
 - 사업기간 : 2018. 1. ~ 2018. 9.
 - 소요예산 : 1,500,760천원(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)

8. 검토의견

- 본 관리계획안은

공공기여 예정인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경관녹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가용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.
- 검토의견으로는

공영주차장 건립은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주차난 및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
- 적정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

내 집 근처 주차장 설치는 기피시설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실제 주차장건설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,

-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주변은 역세권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은 매우 바람직함.
- 다만,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공공기여 토지를 기부 받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여 공공기여 토지 활용방안 노력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.